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35조의2제8항제1호 단서 중 “보험계약은”을 “보험계약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외의 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은”으로 한다.

제5-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-13조의5(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 업무) 영 제59조제3항제15호다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”란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-2조제15호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.

제6-11조의7제2항 중 “위험률차배당준비금, 이자율차배당준비금, 사업비차배당준비금,”을 “총괄배당준비금,”으로 한다.

제6-13조제7항 본문 중 “금액은”을 “금액 및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변동금액을”을 “변동금액 및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”로 한다.

제6-14조제1항 중 “이자율차배당, 장기유지특별배당, 위험률차배당, 사업비차배당으로”를 “총괄배당, 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”로 하고, “(이자

율차배당준비금,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, 위험률차배당준비금, 사업비차배당준비금)”을 “(금리차보장준비금, 총괄배당준비금,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,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이원(위험률차, 이자율차, 사업비차)에 대하여”를 “원천을 감안하여”로 한다.

제6-20조제1항 중 “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, 위험률차배당, 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,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(이자율차배당준비금, 위험률차배당준비금, 사업비차배당준비금)과”를 “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”로 한다.

제7-45조제1항제4호나목 중 “이자율차”를 “계약자”로 한다.

제9-21조제3항 중 “서면으로”를 “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(이하 이 조에서 “서면등”이라 한다)으로”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제2호 중 “서면으로”를 “서면등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약자배당에 관한 적용례)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-11조의7, 제6-13조, 제6-14조, 제6-20조, 제7-45조의 개정규정은 2023

사업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6-1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09호 최초적용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의 경우 순증일 때 가산한다.

제3조(계약자배당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체결된 유배당보험계약의 경우 약관 등 기초서류에 배당과 관련한 사항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2. ~ 4. (생략)

⑨ ~ ⑪ (생략)

<신설>

제6-11조의7(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) ① (생략)

②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, 위험률차배당준비금, 이자율차배당준비금, 사업비차배당준비금,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,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6-13조(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전잉여금의 처리) ① ~ ⑥ (생략)

⑦ 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은 “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”에 가산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⑨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5-13조의5(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 업무) 영 제59조제3항제15호다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”란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-2조제15호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.

제6-11조의7(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총괄배당준비금,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-13조(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전잉여금의 처리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

차배당, 위험률차배당, 사업비차
배당으로 하며, 계약자배당을
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
금(이자율차배당준비금, 위험률
차배당준비금, 사업비차배당준
비금)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
으로 구분한다.

② <삭 제>

③ (생 략)

제7-45조(보험상품의 공시 등) ①
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
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
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
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
한다. 다만, 보증보험의 설명서,
단체보험·퇴직연금(퇴직보험
포함)의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,
일반손해보험(자동차보험은 제
외한다)중 기업성 보험 및 전문
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
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
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4. 제5-6조제1항 제1호 및 제6
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
각목의 사항

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-45조(보험상품의 공시 등) ①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가. (생략)

나.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
년간 공시이율(최저보증이율
포함) 및 직전 3년간 이자율
차 배당률

5.·6. (생략)

② ~ ⑪ (생략)

제9-21조(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
리절차 등) ①·②(생략)

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
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
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·
보완(이하 “보정”이라 한다)이
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
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
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
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
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.

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
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
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
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 계약자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9-21조(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
리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
음)

③ -----

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
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
법(이하 이 조에서 “서면등”이
라 한다)으로 -----.

④ -----

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
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
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
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⑥ 보험회사는 제9-18조제1항
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
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
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
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
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
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
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
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
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
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
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
된 경우

3. (생략)

----- 서
면등으로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서면등으로 -----

3. (현행과 같음)